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이드라인

2017. 9.





목 차



I. 조직변경 개요	1
1. 조직변경 개념	1
2. 조직변경 요건	2
3. 조직변경 효과	6
II. 조직변경 절차	7
1. 조직변경 절차 개요	7
2. 총회전 점검/준비	7
3. 총회전 준비사항	8
4. 총회 소집절차	16
5. 총회 개최	19
6. 총회 의결 후 절차	22
7.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24
III. 조직변경에 따른 신고 또는 인가시 제출서류	26
1.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6
2.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7
3. 신청서류 예시	29

I 조직변경 개요

1. 조직변경 개념

-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
 - 기존에 형성된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 보호
 - 새로운 법적 주체 설립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낭비의 최소화

□ 현행 “조직변경”과 기존 “조직전환” 비교

구분	조직 변경	조직 전환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 2 및 제105조의 2	▪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
대상	▪ 법에서 정한 법인	▪ 법인이 아닌 사업자 등
효과	▪ 기존 법인과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 으로 본다	▪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 으로 본다.

□ 유사 법제 비교

- 상법 및 개별 법상으로 기존 조직의 다른 형태 법인으로의 **조직변경 규정을 두고 동일성을 인정**

구분	조직변경의 내용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상법 제287조의43, 제604조 제1항, 제287조의 44, 제607조) ▪ 합명회사 ↔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동법 제242조, 제286조) ▪ 총주주(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 요함
상법이외	▪ 농업협동조합법, 변호사법,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조직변경 규정되어 있음.

2. 조직변경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요건 개관

- 요건1: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 요건2: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 요건3: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않을 것
- 요건4: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을 것
- 요건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 수리(협동조합) 및 인가(사회적협동조합)를 받을 것

[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요건]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자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요건1: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제60조의 2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 2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이하 “법인등”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등

- 조직변경의 대상은 “법인”만 가능
- 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대상 법인에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도 포함**
(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직변경 대상 사례 검토]

1. 상법상 회사중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조직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3.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4. ‘법인내 사업단’ 및 ‘법인 지점’의 경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5.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사단 형태의 사업자’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6.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은 조직변경의 대상이 아님
7.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은 조직변경 불가

□ 요건2: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기존 구성원 전원

- 총회의 결의 사항

① 정관

-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
- 협동조합의 필수적 설립요건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은 제86조)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포함 되어야 함.
- 기획재정부가 공시하는 표준정관례 및 세부유형별 정관례 참조

② 출자금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에서 출자금을 확정해야 함
- 먼저 변경 전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확정하고, 출자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야 함.

③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지분 정리/ 사내 유보금 정리/ 사채상환 완료
- 협동조합의 설립 최소기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

*** 조직변경 전원 동의 요건 예외 규정**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6.3.2.)으로 법 제105조의2 제2항 신설
- 민법 및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중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 소속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변경 가능

□ 요건3: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않을 것

- 조직변경 이후 설립될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기존 법인의 순재산을 초과할 수 없음

□ 요건4: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을 것**

- 필요한 경우, 기존 조직의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함

□ 요건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협동조합) 및 인가(사회적 협동조합)를 받을 것

- 조직변경 절차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의 신고수리(협동조합) 또는 인가(사회적협동조합)를 받을 것

3. 조직변경 효과

- 기존 법인과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

구분	조직변경의 효과
세금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음 다만,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세금(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등)은 부과됨
근로관계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업력인정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II 조직변경 절차

1. 조직변경 절차 개요



2. 총회 전 점검/준비

1] 재무제표

- (준비서류) 순재산액 확정을 위해,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 계산서 준비
- (작성시기) 순재산액 확정을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시기는 조직변경 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필요시 가결산)

2] 협동조합의 세부유형 결정

- (협동조합의 유형)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 상존함
- (유형 결정) 구성 조합원의 형태와 사업모델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유형 결정

3. 총회 전 준비사항

① 정관안 마련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
- 협동조합의 필수적 설립요건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86조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함.
-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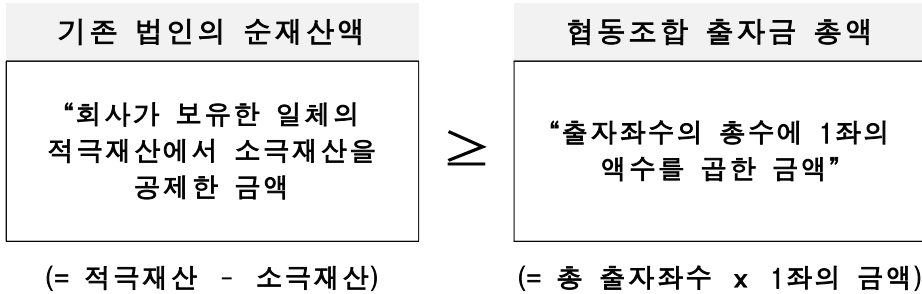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및 86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이드북**」 과 「**협동조합 업무지침**」 등 참고
- ※ www.coop.go.kr 접속→ 「알림마당」 →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② 출자금 총액 결정 및 사내유보금 정리

○ 출자금 총액 결정

-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순재산액의 의미) 순재산액은 법인의 ‘적극재산-소극재산’으로 재무상태표 상 ‘총 자산-총 부채’로 표현됨
- (순재산액의 확정시기) 순재산액은 총회 준비과정의 지분정리 절차를 종료한 후, 총회 공고일 기준의 재무상태표 작성(가결산) 하여, 조직변경 총회에서 순재산액을 확정 의결 하도록 함
- (출자금 총액 결정) 출자금 총액은 기존 구성원과 합의를 통해 구성원별 출자금을 결정하도록 하며, 조직변경 총회에서 출자금 총액을 확정 의결 하도록 함
- (출자금 총액 결정 방법) 출자금 총액은 ‘출자 1좌 금액’ 결정과 ‘총 출자좌수’ 결정의 2단계로 구성됨.
 - ① (주식회사, 협동조합)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출자좌수 배분.

※ 총 출자금=총 출자좌수 x 1좌의 금액

[사례] 기존법인의 순재산액과 협동조합 출자금

- Q) 자본금 1억, 부채 0원인 주식회사가 설립 후 2년이 지난 후 출자금 총액 1억원인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첫 해의 경영활동 결과 5천만 원의 이익이 나고 두번째 해 경영활동결과 3,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두번째 해에 3,000만 원의 손실(결손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순재산액 1억 2,000만 원(=1억원 + 5천만원 - 3,000만원)이 협동조합의 예정 출자금 총액 1억 원을 상회하므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네. 조직변경 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缺損金)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 경우의 그 감소분”을 의미하므로, 실령 회사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조직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순자산액이 협동조합의 예정 출자금 총액을 상회하기만 한다면, 회사는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유보된 순자산액(= 적극재산 - 소극재산)이 협동조합의 출자좌수 총액(= 총 출자좌수 x 1좌의 금액)을 상회한다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순자산액 1억 2,000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3천만 원)	≥	협동조합의 예정 출자금 총액 1억 원
--	---	-------------------------

② (비영리 사단법인) 기존 법인의 자산 중 회원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 출자를 통하여 출자금 결정 및 출자좌수 배분. 단,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의 순자산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

○ 사내유보금 정리

- (사내유보금)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으로(시행령 제14조, 제29조)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축적된 나머지 의미
- (적립금으로 전환)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조직변경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적립금으로 전환 할 수 있음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내유보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총회 결의를 불문하고 당연히 사내유보금은 적립금으로 전환됨

○ 조직변경시 기존 법인등의 순재산액과 출자금 총액

i. 조직변경 흐름도

<기존 법인 재무상태표>



<협동조합 재무상태표>



- 조직변경 이후의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액(=자산-부채)을 초과 할 수 없음
-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납입금에 잉여금 발생시 더하고, 결손금 발생시 해당 금액을 제한 금액임

ii. 조직변경 세부 흐름도: 사내유보금(=잉여금) 처리

<기존 법인 재무상태표>



<협동조합 재무상태표>



- 기존 법인의 사내유보금(=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출자금 총액은 '주주납입금+사내유보금' 이내에서 결정
- 출자금 총액 결정은 사내유보금의 처리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① 기존 법인의 주주납입금에 더하여 협동조합의 출자금 결정 ② 기존 주주등에 대한 배당 ③ 협동조합의 적립금 전환으로 처리 가능하고, 각각의 경우 조합 가능

[사례] 사내유보금 처리

1. 기존 법인의 주주납입금 5,000만원이며, 사내유보금 1,000만원인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경우1: 협동조합의 출자금 설정: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 6,000만원, 적립금 0원
 - 경우2: 협동조합의 출자금 설정 + 배당금 설정: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 5,500만원, 배당금 500만원
 - 경우3: 협동조합의 출자금 설정 + 배당금 설정 + 적립금 전환: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 5,300만원, 배당금 300만원, 적립금 400만원

- 기존 구성원과 사전 합의를 통한 사내유보금 처리 방안 마련

iii. 조직변경 세부 흐름도: 결손금 존재하는 경우

<기존 법인 재무상태표>



<협동조합 재무상태표>



① 주주납입금에서 결손금 차감후, 자산 감소

② 결손금액 만큼 부채증가, 자산 불변

- 기존 법인이 결손금의 누적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출자금 총액은 '주주납입금 - 결손금'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 조직변경은 기존 법인과 동일성을 전제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존법인의 ['주주납입금-결손금'='출자금 총액'] 이어야 함
- 결손금 발생시, '사내유보금'이 없으므로 사내유보금 처리 불요

③ 지분 정리

- (지분정리) 협동조합 조직변경시,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① 총 출자비율 30% 초과 불가, ② 자사주 보유 불가 및 ③ 질권 설정 불가), 지분정리를 해야 함
- (지분정리 방법) 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 및 지분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연번	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지분정리방법
1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주식(지분)양도 계약
2	자사주 보유	협동조합은 자사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
3	질권 설정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제22조 제3항)	피담보채무 상환

- (지분정리 시기) 지분정리는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직변경 총회 공고일까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 함.

[사례] 개인별 최소출자규모 유지를 위한 지분 정리

- Q) 주주 5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5인의 주식수가 다른데(A와 B가 각 25%, C가 20%, D와 E가 각 15%의 비율),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면서 출자비율을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지분 정리를 해야하나요?
- A) 아니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변경 전에 지분 정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적립금으로 되지 않는 한, 협동조합 전환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별 최소출자규모를 유지하는 선으로 기업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미리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사채(社債)상환 완료

- (사채) “사채*”란 주식회사가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을 대상으로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유가증권

* 대출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별적인 채무와 구별

** 사채는 주식회사만 발행 가능 하므로 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사채상환절차 필요하며, 사채를 상환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전환 불가.

- (사채상환 시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통해, 사채 정리가 필요하며, 예산안 승인을 위하여 조직변경 총회 공고일 이전 사채상환 완료

[사례] 사채상환의 완료

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부채 : 총 40억원,
유동부채 : 20억 원, 비유동부채 : 20억 원(사채 5억 원, 장기차입금 4억 원, 퇴직급여충당금 2억원, 임대보증금 1억 원, 가맹보증금 8억 원)
동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 전에 부채 40억 원 중 정리해야 할 항목이 있는가요? 정리해야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요?

A) 비유동부채 중 사채 5억 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채무는 당연히 협동조합의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채는 승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전환 전의 기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협동조합의 부채가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비유동부채 중 사채 5억 원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채의 상환은 신고 내지 인가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하거나, 예산안 승인이 조직변경 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직변경 총회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⑤ 설립 최소 기준 구비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5인 이상의 발기인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5인* 이상의 발기인

* 5인은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중 둘 이상의 유형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 변경 전 주식회사의 주주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등을 통하여 주주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도록 함

⑥ 관계행정기관의 인허가

- (사전 인허가)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인가, 허가,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함**
- (관계법령 사전검토) 관계법령에 대한 사전검토시 두가지 사안 검토 필요. ① **조직변경 이후의 협동조합 형태로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와 ② **관계법령에서 조직변경시 사전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 이 부분은 신청기관이 유관기관에 질의하여 직접 확인 필요

4. 총회 소집절차

※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총회 절차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 등의 근거 법률이 적용

① 총회 소집 결정 내지 청구

- (주식회사) ① 상법 제362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총회 소집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366조 제1항)
③ 소수 주주의 소집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 가능(동조 제2항).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및 33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의결하여 이사장이 총회 소집(기본법 제28조 및 33조)
- (민법상 사단법인) ① 이사가 총회 소집(민법 제69조, 제70조)
② 총 사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이사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제2항)
③ ②의 청구 이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 소집 가능(동조 제3항)

② 총회의 소집통지 내지 공고

- (주식회사) 상법 제363조(상장회사는 특례가 적용되어 제542조의 4)에 근거하여, ① 총회일 2주 전 서면으로 회의일, 총회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 발송 ② 주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발송도 가능 ③ 정관으로 소집통지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는 없음

주식회사에서 총회 소집통지가 완화 되는 경우(상법 제363조 제3항, 제4항)

- 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 같음
 - 즉,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②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 개최 10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통보 또는 전자문서 통지(주주 동의시)

- (유한회사) 상법 제573조에 따라, 사원총회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 생략도 가능**
- (유한책임회사나 그밖의 영리법인) ① 총회 통지나 공고의 방법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②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으로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
- (민법상 사단법인) 민법 제71조에 따라 이사가 총회 1주 전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

③ 총회 소집 공고문의 내용

- ① 총회의 일시 및 장소
- ② 총회의 목적사항(보고안건 및 의결안건)
 - 의결안건
 - 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 나) 정관 승인
 - 다) 출자금 결정 및 사내유보금 정리 관련 사항
 - 라)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보고안건 :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중 보고안건
 - 가) 설립최소기준 구비
 - 나) 사채상환완료
 - 다) 지분정리
 - 라) 관계 행정기관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

5. 총회 개최

①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 (소속 구성원 확정) 변경 전 영리법인등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일 현재 구성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기준으로 확정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등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명부' 제출

*** 민법 등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 제출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구성원 전원 참석 및 전원의 동의로 의결
- (서면결의) 서면결의가 허용되는지와 그 절차에 관해서도 변경 전 영리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정관, 내부규정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

유형	서면결의 허용여부	근거 및 내용
주식회사	허용	-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상법 제368조의3 제1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주주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서면 결의로 총회 갈음 가능(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유한회사	허용	- 미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 사원이 서면으로 결의할 것에 동의한 경우 (상법 제577조 제1항) - 결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총 사원의 서면동의를 있는 경우(상법 제577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	허용	- 정관에서 서면결의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 - 정관에서 정한 바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유한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에 준함)
협동조합	불허	- 총회 소집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를 갈음하는 것은 불가(허용 규정 없음)
민법상 사단법인	허용	-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 행사 가능(민법 제73조 2항)

- (의결권의 대리행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지는 그 절차와 관련해서 기존 법인의 적용 규정에 따라 판단 가능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허용여부	근거 및 내용
주식회사	허용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 (상법 제368조 제2항).
유한회사	허용	-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 (동법 상법 제368조 제2항, 제578조)하므로 의결권 대리행사 가능
유한책임회사	불허	-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사원의 의사를 파악하면 되지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인정되지 않음 (허용규정없음)
협동조합	허용	-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¹⁾ 이어야 함. -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함 - 대리인은 다른 정관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
민법상 사단법인	허용	- 사원은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 행사 가능(민법 제73조 2항)

1) 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의미함

② 총회 결의 사항

① 총회의 의결안건

- 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 나) 정관 승인
- 다) 출자금 결정 및 사내유보금 정리 관련 사항
- 라)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총회의 보고안건

가) 설립최소기준 구비

나) 사채상환완료

다) 지분정리

라) 관계 행정기관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

6. 총회 의결후 절차

① 채권자 보호절차

- (취지) 변경 전 법인 등의 채권자에게 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세부절차)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

①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내에 법인등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30일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② 기존 법인등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30일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함

③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영리법인등은 신고 내지 인가 신청 전까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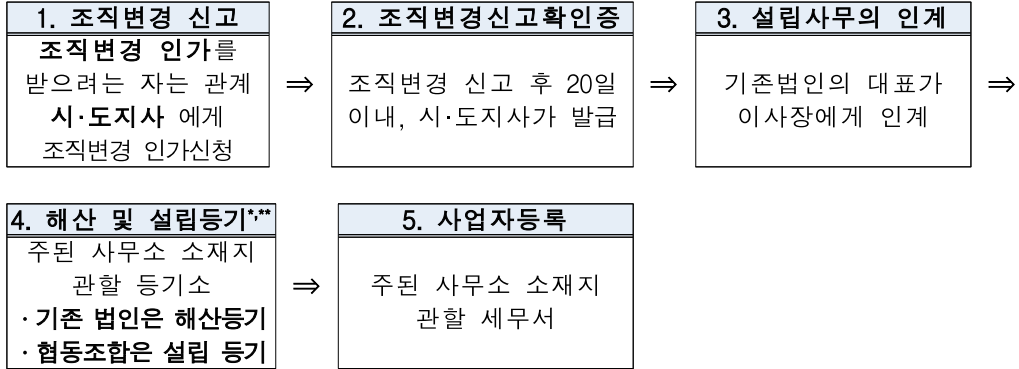
※ 채권자가 공고 또는 최고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 전 영리법인등은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음

- (효과) 채권자가 공고 또는 최고 후 채권자가 기간 내에 이의 제출하지 아니한 때 그 채권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②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신청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법 제60조의2 제6항, 시행령 제15조, 제8조)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세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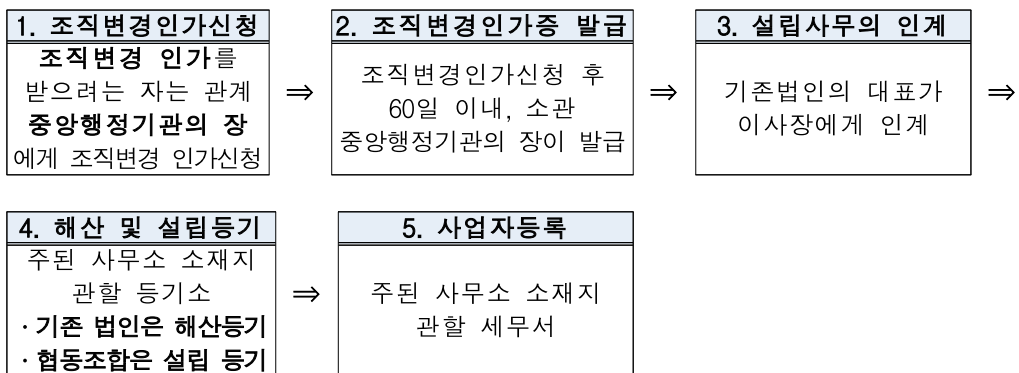


* 해산등기 기한: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설립등기 기한: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05조의2 제6항, 시행령 제30조)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절차>



* 해산등기 기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설립등기 기한: **조직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기한내 미등기시 인가 취소 사유)

7.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① 등기: 해산 등기 및 설립 등기

-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총회의 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조직변경에 관한 시·도지사 신고(중앙부처 인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족함
-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경 전 영리법인등에 대한 해산등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청산종결등기 없이 등기기록이 폐쇄됨
 - ※ 등기분류 번호: 분류번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례>000051-0000000

② 사업자등록증

- 협동조합에 관한 신규 등기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신청
- 사업자등록증변경신청서에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 명기
- 업력 인정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지속 사용
 - 기존법인과 조직변경된 협동조합의 동일성 인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지속 사용 필요
 - 현행, 사업자등록증 발급체계를 고려할 때, ① '영리법인(주식회사) →영리법인(협동조합)', ②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으로의 조직변경시, 동일한 사업자등록증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리법인(주식회사,협동조합)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으로의 조직변경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체계상 동일한 번호 부여는 불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은 불가피함
 - 사업자등록증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업력의 인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성원 명부 등을 통한 간접 증명) 필요

<사례1-조직전환시 사업자등록증 승계(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 존			전 환이 후		
조직명	사업자등록증 번호	개업년월일	조직명	사업자등록증 번호	개업년월일
인산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34-82- 04659	2000.07.15	인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134-82- 04659	2000.07.15

<사례2-조직변경시 사업자등록증 승계(영리법인 → 영리법인)>

기 존			전 환이 후		
조직명	사업자등록증 번호	개업년월일	조직명	사업자등록증 번호	개업년월일
이산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312-86- 64804	2014.05.02.	이산로컬푸드 협동조합	312-86- 64804	2014.05.02.

III

조직변경에 따른 신고 또는 인가시 제출서류

1.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6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5호서식)
7	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추가 제출 서류

1. 기존 조직의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
 - 기존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 기존 조직의 **순재산액 확정**을 위한 서류
 - '재무제표' (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을 마친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5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
6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서식)
7	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1. 기존 조직의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
 - ① 기존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② 기존법인이 협동조합인 경우 '조합원(출자자) 명부'
 - ③ 기존법인이 비영리사단법인인 경우 '회원명부'

2. 기존 조직의 순재산액 확정을 위한 서류

- ① 기존법인이 주식회사, 협동조합인 경우 **‘재무제표’**
(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을 마친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② 기존법인이 비영리사단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을 마친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3. 신청서류 예시

■ 신청서류 예시① 조직변경 총회 개최 공고문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총회 개최 공고

기존 ○○○ 법인의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기존 ○○○ 법인의 구성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의결 안건

- 가.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 나. 정관 승인
- 다. 출자금 결정 및 사내유보금 정리 관련 사항
- 라.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마.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4. 보고 안건

- 가. 설립최소기준 구비 등
- 나. 사채상환 완료
- 다. 지분정리
- 라. 관계 행정기관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

20 . . .

※ 조직변경 총회 공고는 기존 법인의 총회 개최 공고 규정(법령 및 정관 등)
에 따라 해야 함

○○○ 주식회사
대표 이사 ○ ○ ○ (인)

※ 조직변경 총회 공고는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이 수행

조직변경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조직변경 전 회사 명칭기재)는 20○○년 ○월 ○일 개최된 총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결의(이하 “본건 조직변경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조직변경 결의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제출 장소: ○○의 주사무소 주소 및 대표 연락처 기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 주식회사(또는 협동조합)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 인
○○시 ○○구 ○○동 ○○번지

변 제 영 수 증

채권액 금 ○○○○원

귀 회사의 조직변경 결의에 대하여 20○○년 ○월 ○○일 이의를 제출하였던 바, 금일 귀 회사가 위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므로 이에 영수합니다.

20○○년 ○월 ○○일

채권자 ○ ○ ○ 인
○○시 ○○구 ○○동 ○○번지

○○ 주식회사(협동조합) 대표자 귀중

진술서

조직변경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뜻을 제출할 것을 별지와 같이 20〇〇년 〇월 〇〇일 〇〇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하였으나,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없었음을 진술합니다.

20〇〇년 〇월 〇〇일

〇〇 주식회사(또는 협동조합)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대표이사 ○ ○ ○ 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 지방법원 〇〇 등기소 귀중

